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2.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31일, 이해식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 11. 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2025. 1. 15)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1. 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해식의원)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건강한 노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노인의 체육 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노인 맞춤 체육 시설 부족, 비용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노인 체육 활동 참가율이 여전히 저조하여 노인의 체육 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노인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 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1호의2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전완희)

가. 노인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사용

(1)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기금으로 노인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제11호의2 신설).

[개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1. ~ 11. (생 략) <신 설> 11의2.·11의3. (생 략) 12. (생 략) ② ~ ④ (생 략)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 1. ~ 11. (현행과 같음) 11의2. 노인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 지원 11의3.·11의4. (현행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현행법상 국민체육진흥계정(국민체육진흥공단 관리·운용)은 국민체육진흥 연구, 국민체육시설 확충, 선수·체육지도자 양성, 체육인 복지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1] 개정안은 노인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 지원을 위하여도 국민체육진흥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2]

2023년 기준 70세 이상의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율(주 1회 이상)이 60.6%에 달하고[3], 고령화 시대 및 기대수명 확대로 노인의 체육활동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 국민체육진흥계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사업(2009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해 보임.

---

1)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1.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급 사업
2.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3.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4. 「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지원 사업 등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5. 광고나 그 밖에 국민체육진흥계정 조성을 위한 사업
6. 삭제 <2021. 8. 10.>
7.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
8.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
9. 삭제 <2014. 12. 23.>
10.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 스포츠윤리센터 및 체육인재육성 관련 단체의 운영·지원
11.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11의2.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
11의3.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 및 신고자·피해자 지원
12.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참고로, 현행법 제10조의2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 「2023 국민생활체육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23.12. p.119

[표]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사업 추진 현황

<table>
<tr><td>사업
목적</td><td colspan="5">o 어르신들에게 안전한 생활체육보급 기회 확대
o 노인생활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및 여가생활 지원</td></tr>
<tr><td>사업
대상</td><td colspan="5">전국 60세 이상 어르신 * 단, 국제표준 노인기준연령 만 65세 이상에 우대 적용</td></tr>
<tr><td>사업
내용</td><td colspan="5">o 어르신 생활체육 종목 보급 (주관: 회원종목단체)
- 교실형(종목별 생활체육교실) / 대회형(페스티벌)
o 어르신 생활체조 및 체력관리교실 (주관: 시도/시군구체육회)</td></tr>
<tr><td>예산</td><td colspan="5">o ’24년 2,400백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5161-301))</td></tr>
<tr><td rowspan="5">추진
실적</td><td>연도</td><td>생활체육
(교실형)</td><td>생활체육(대회형)</td><td colspan="2">생활체조
및 체력관리교실</td></tr>
<tr><td>’21</td><td>19종목
451개소
7,453회
99,312명</td><td>11종목
(탁구, 볼링, 검도, 그라운드골프,
궁도, 당구, 국학기공, 체조,
댄스스포츠, 에어로빅, 족구)</td><td>지역별
방송콘텐츠</td><td>13개 시도
65회</td></tr>
<tr><td></td><td></td><td></td><td>생활체조
및 체력
관리교실</td><td>88개소
2,982회
57,710명</td></tr>
<tr><td>’22</td><td>19종목
518개소
8,075회
177,294명</td><td>16종목
(탁구, 볼링, 검도, 그라운드골프,
궁도, 당구, 국학기공, 체조, 댄스스포츠,
에어로빅, 족구, 파크골프, 우슈,
소프트테니스, 배드민턴, 테니스)</td><td>지역별
방송콘텐츠</td><td>11개 시도
68회</td></tr>
<tr><td></td><td></td><td></td><td>생활체조
및 체력
관리교실</td><td>169개소
8,451회
152,953명</td></tr>
<tr><td>’23</td><td>18종목
635개소
12,720회
192,815명</td><td>17종목
(탁구, 볼링, 검도, 그라운드골프,
궁도, 당구, 국학기공, 체조, 댄스스포츠,
에어로빅, 족구, 파크골프, 우슈,
소프트테니스, 배드민턴)</td><td>생활체조
및 체력
관리교실</td><td>17개 시도
204개소
11,312회
220,553명</td></tr>
<tr><td>’24
(현재)</td><td>19종목
620개소
12,400회
200,000명</td><td>19종목
(탁구, 볼링, 검도, 그라운드골프, 궁도, 당구,
국학기공, 체조, 댄스스포츠, 에어로빅,
족구, 파크골프, 우슈, 배드민턴, 게이트볼,
소프트테니스, 산악, 수영, 보디빌딩)</td><td>생활체조
및 체력
관리교실</td><td>17개 시도
220개소
11,000회
220,000명</td></tr>
</table>

관련하여, 법 제22조제1항제11호에서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고하여 개정안도 ‘노인층의 체육 활동 지원’으로 수정하여 다양한 지원 방법을 포섭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음.

참고로, 문체부는 시설에 대한 기금의 사용 근거는 현행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기규정되어 있고, 개정안에서 '노인 체육 프로그램 지원' 외에 '노인 체육시설 지원' 근거까지 신설하는 것은 세대간 통합 및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 중 시설 지원에 대한 내용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임.[4)]

4) (기재부) '노인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필요한 비용 및 시설 지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 등에 근거하여 기금 사업으로 추진 중으로, 지원근거 중복에 해당한다는 의견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임오경)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소수의견 요지

해당사항 없음

9. 관련 위원회 의견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 타

없 음